

제159회(임시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부록)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사무국

목 차

1.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1면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4면
2.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7면
○서울특별시종로구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면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164

제출년월일 : 2006. 3.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당직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수당을 1인당 1회 “3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함. (안 제4조)

나.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 및 법명 표기법에 맞추어 표기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예정 (23,155천원)

나.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서울특별시 종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3조 제2호)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4
----------	------

제출년월일 : 2006. 3.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거 당직근무를 하는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당직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수당을 1인당 1회 “3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함. (안 제4조)

나. 제명 등을 한글 맞춤법 및 법명 표기법에 맞추어 표기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예정 (23,155천원)

나.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서울특별시 종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3조 제2호)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하고,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규정”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중 “의료법”을 “「의료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종로구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하고, “35,000”을 “50,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u>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u> ”	“ <u>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u>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공무원법</u> 제46조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u>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u>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공무원법</u> 」 ----- ----- ----- ----- 「 <u>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u> 」 ----- ----- -----.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u>의료법</u>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 ----- 「 <u>의료법</u> 」 ----- ----- ----- ----- 1.~2. (현행과 같음)
제4조(당직수당) ① <u>서울특별시종로구 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u> 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실비 수당은 1인당 1회 <u>35,000원</u> 으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당직수당) ① 「 <u>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u> 」 ----- ----- <u>50,000원</u> ----- ----- ② (현행과 같음)